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

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**안 건 요 지**: 별 첨 참 조

4. 검 토 의 견: 별 첨 참 조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6년 7월 18일

교 육 사 회 위 원 회 전문위원 안 문 환

####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6년 7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# 1. 개정사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"회기수당"에서 "의정활동비"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정활동비를 정의함(안 제2조 제2호).
- 나. 보상금 지급기준을 "회기수당"에서 "의정활동비"로 변경함 (안 제4조).

### 3. 근거법규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4, 제17조의2, 제17조의4 내지 제19조, 제19조의3, 제20조 내지 제25조의 준용).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.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(2006. 2. 28, 대통령령 제19322호)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의거(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)하여,
- 교육위원에게도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

#### 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
- 제명을 "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"에서 "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"로 하고,
- 의정활동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,
-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"회기수당"에서 "의정활동비"로 정하였음.

#### ○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

-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하고, 의정활동비에 대한 정의 등을 변경한 사항으로,
- 이는,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과 용어정의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